서울특별시 마포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22-43

제출년월일 : 2022. 4.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구민과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～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지원대상, 지원신청, 지원중지(안 제4조～제6조)

라. 위기가구 발굴 참여자 포상 및 사기진작(안 제7조～제8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, 제14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2. 3. 3. ~ 3. 23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 및 제14조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마포구 내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,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마포구민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위기가구”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,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.
2. “복지사각지대”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위기가구의 발굴·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민간 법인·단체·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게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 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.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
1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

이라 한다)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 가구

2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

제5조(지원신청 등) ① 제4조에 해당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기가구는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신청자의 소득·재산·금융 등을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 중지 등)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자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중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,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7조(포상)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 지역복지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,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.

제8조(참여자의 사기 진작 등)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참여하는 구민의 활동 장려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한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9조(비밀누설금지)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지서식>

위기가구지원 신청서

신청인	성 명			생년월일			
	주 소	(연락처 :)					
가족사항	관계	성 명	주민등록번호	직 업	월 소득	건강상태	동거여부
	가구주						
주거실태	□자가(만원) □전세(만원) □월세(보증금 만원/월 만원) □무료 □기타( )						
	구체적인 주거상황						
소 득	원 ( )						
일반재산	원 ( )						
금융재산	원 ( )						
조사자의견							

상기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.

20 년 월 일

조사자 직 성명 (인)

확인자 직 성명 (인)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

<뒷면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작성>

[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]

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(및 민감정보)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아래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
1. 수집·이용 개인정보	1) 신청인 정보(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 등) 2) 신청인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3) 수급자격 확인에 관한 사항 - 주거, 소득, 재산에 관한 사항 -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-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2. 법적근거	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3. 보유 및 이용기간	1) 이용기간 : 해당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 2) 보유기간 : 해당서비스가 종료되는 기간으로부터 5년간 보관하며, 전산시스템에서의 삭제 등의 방법에 따라 파기
4.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및 제한사항	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므로, 위 내용에 대해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시 원활한 상담 및 관련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상기 본인은 사회보장급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복지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.
또한, 본인은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통해 소득, 재산 등에 관한 민감 정보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을 수집·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?

□ 동의 □ 비동의

20 년 월 일

동의자 성명 _____ (인)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(서울특별시 마포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)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안 제7조(포상)에 따라 개인 및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 등에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포상 지원

○ 안 제8조(참여자의 사기 진작 등)에 따라 활동 장려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보상과 지원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

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우리구「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

4. 작성자 :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박소정(02-3153-8848)